

사회봉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봉사는 학생·교직원의 교내외 사회봉사활동을 말하며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회봉사활동 영역) ①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 및 지원 활동
2. 비영리 민간 및 공공단체 지원 활동
3. 교회 및 기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봉사 활동
4. 유엔(UN) 또는 그 산하기구, 기관에서 지구 환경과 세계 시민의 안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활동
5. 학생 봉사활동 지도
6. 국내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시 봉사활동
7.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각종 사회봉사활동

②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사회 복지시설 및 기관 봉사활동
2. 공공기관 봉사활동 : 관공서 및 학교, 의료기관 등의 봉사활동
3. 공익 봉사활동 : 헌혈, 환경보존활동, 청소년 지도활동, 공익단체 활동 등
4. 교회 및 기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5.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회 소외계층 지원 활동
6. 교내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
7. 기타 전공과 관련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
8.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각종 사회봉사 활동

제4조(사회봉사활동 지원) 대학은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사회봉사활동 학점제)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봉사상·봉사인증제) ①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학생에게는 학생상벌규정에 의하여 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장은 그 실적을 평가하여 학생에게 봉사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학생 및 교직원 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지원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활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생·교직원의 교내외 사회봉사활동 지원
2. 사회봉사활동 및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3. 봉사자 및 봉사 수요기관 상담 지원
4. 국내 및 해외 봉사단 파견 및 교육 지원
5. 대외협력 및 지역사회연계 사업 추진
6. 기타 본 봉사단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